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서상열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743)】

- 가. 발 의 자 : 서상열 의원(찬성자 55명)
-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25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김춘곤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774)】

- 가. 발 의 자 : 김춘곤 의원(찬성자 44명)
-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이성배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803)】

- 가. 발 의 자 : 이성배 의원(찬성자 49명)
-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59)】

- 가. 발 의 자 : 강석주 의원 외 29인
- 나. 발의일자 : 2023년 5월 30일
- 다. 회부일자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서상열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743)】

가. 제안이유

-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지역구 내 시립체육시설과 같이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주로 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지역 주민 단체들이 마을 행사 등을 목적으로 시설 이용시에 별도 이용료 감면을 받지 못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이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

【김춘곤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774)】

가. 제안이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2020.6.) 권고하고 있음.

- 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풋살구장, 다목적구장, 인라인하키장, 보조경기장, 축구장, 보조체육관, 다목적실, 간이야구장)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90%에서 일자별로 전액반환, 10%, 30%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풋살구장 등, 규칙으로 정함)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정함. (안 제11조제2항제1호)

【이성배 의원 발의안(의안번호 803)】

가. 제안이유

- 잠실종합운동장 등 대규모 체육문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인근 주민들은 다수의 경기·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나 마땅한 개선대책이 없는 상황임.
- 이에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감면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1바목 신설)
-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2호사목 신설)

【강석주 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859)】

가.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함.
-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함으로써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4명)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여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체육시설의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함. (안 제10조)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개정안의 개요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상열의원, 김춘곤 의원, 이성배 의원, 강석주 의원으로 총 4건의 안건이 각각 발의되었음
- 서상열 의원안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과 별표5 상업사용료, 김춘곤 의원안은 안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규정, 이성배 의원안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규정, 강석주 의원안은 안 제9조(입장료)와 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의원발의안 개정사항>

서상열(안)	김춘곤(안)	이성배(안)	강석주(안)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안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안 제9조) ▶입장료
(별표5) ▶상업사용료			(안 제10조) ▶사용료 감면

나. 조문별 검토

(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입장료 면제 등 (안 제9조·10조)

- 강석주 의원(안)은 시립체육시설의 다자녀 가족에 대한 입장료 면제 및 사용료 감면 대상 인원 제한(4명)을 없애 다자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최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는 개인연습 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시행(2023.3.27.) 중임.
- 다둥이 행복카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두 자녀 이상 가정에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여 저출산시대에 가족 친화적인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음.
- 세 자녀부터 다자녀 지원혜택을 수혜받는 타시도와 달리 출산 양육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자 서울시는 두 자녀 이상 가정부터 혜택을 주고 있음.
- 그러나 현행과 같이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본인을 포함한 4명으로 제한할 경우 오히려 세 자녀 이상인 가구는 감면혜택의 한계가 발생함.
- 이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은 본인 포함 4명에서 전원으로 인원수의 제한을 풀고, 입장료를 현행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임.

- 또한 안 제10조에서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50% 감액하는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는 감액율은 수정하지 않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본인을 포함한 4명에서 가족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2) 지역 직능단체의 전용사용료 감면 (안 10조)

- 서상열 의원(안)은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이 주민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행사를 주최할 시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별표5 상업사용료’에서 물품 판매부스 1개당 가격이 최소 5만원부터 시작하였으나 3만 5천원으로 낮추고자 발의된 것임.
- 안 제10조는 사용료 감면 대상에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를 감면 주체로 하고 있으나 직능단체와 지역주민단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지역 범위가 광범위하여 ‘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시킬 필요성이 있음.
 -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가 아니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선출직 후보의 지지·지원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또한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의 목적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p> <p>가. ~ 마. (생략)</p> <p>바. <u>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 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u></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u>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 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u></p>

- 개정안은 ‘별표 5의 상업사용료’ (제7조제1항 관련)는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를 위한 판매부스 1개 당 최소가격을 5만원에서 3만5천원으로 낮추고 있음.
- 판매부스 1개당 최소가격을 낮추는 것은 지역 주민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비용을 낮추기 위한 의도라고 판단되나, 합리적인 산출조사나 감액 근거가 부족해 보임. 따라서 [별표5] 상업사용료는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드림.

(3) 소음·교통체증 발생 지역의 사용료 감액 (안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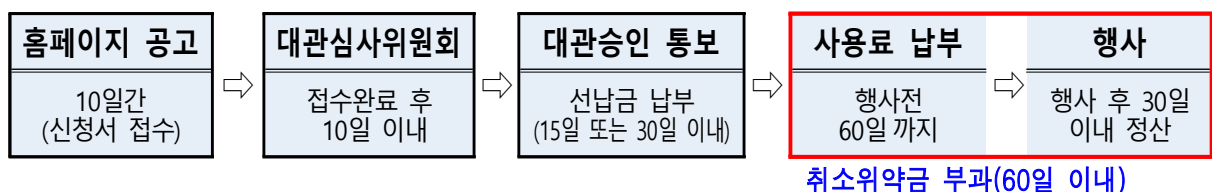
- 이성배 의원(안)은 시립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을 규칙으로 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인연습사용료와 생활체육시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혜택을 주어 민원을 해소하고자 발의된 것임.
- 대규모 시립체육시설의 경우, 각종 체육대회와 문화행사로 소음과 교통체증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주변지역 소음영향 조사 용역” (2022.8.~2023.3.8.)을 수행하였으며 송파구에 위치한 잠실야구장과 잠실 주보조경기장 운영 시 주변에 미치는 소음영향을 조사하고 소음저감방안과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방안을 검토함.
 - 야구장 프로야구 경기시 소음관리기준 60db를 초과하는 소음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용역 기간 중 소음영향이 가장 큰 주경기장의 IU콘서트 당시, 최대 소음피해는 약 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 장기적으로는 방음벽 등 소음차단 시설 설치를 통해 소음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하여 편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소음 및 교통체증으로 피해를 본 지역에 긍정적인 환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피해 주민과 피해 정도를 정확하게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대규모 체육시설 일대 지역 주민을 위한 정책적 판단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됨.

(4) 사용료 반환기준 완화(안 제11조)

- 김춘곤 의원(안)은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단계적으로 낮춰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이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면 사용 방식에 구분없이 위약금 상한은 총액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기간 차등 또는 단일 위약금제 관계없이 특정일까지 취소하면 전액 환불 해 주고, 예약대기제 확대 등 합리적인 반환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음(2020.6.8.)
- 사용료 반환이 적용되는 전용사용 시설은 대규모 문화행사와 경기를 위한 시설과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로 구분할 수 있음.
 -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은 대관심사를 거쳐 허가승인을 최소 3개월 전에 신청하고,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은 공공서비스예약, 전화예약, 자체예약사이트 등을 통해 1달 이내 단위로 예약을 실시하고 있음.

<시설 대관절차>



※ 표준 대관절차 3~4개월 소요

〈시립체육시설 목적별 구분〉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 시설 : 7개소]	
▶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실내체육관,	
▶ 목동주경기장, 서울월드컵경기장, 고척동야구장, 장충체육관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 : 12개소]	
▶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내 보조체육관, 인라인하키장, 풋살구장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풋살구장	
▶ (고척동) 축구장, 풋살구장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 (효창운동장) 축구장 / (장충체육관) 보조체육관, 다목적실1·2	

- 이러한 시설의 전용사용 및 부속·상업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반환 및 취소 위약금은 안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용사용료는 60일 전 취소할 경우 30%, 10일 전 취소는 9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부속시설 사용료는 20일 전 취소할 경우 10%에서 1일 전 취소할 경우 50%까지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음.

〈조례상 사용료 반환기준〉

전용사용료		부속시설사용료, 월드컵 풋살구장	
반환기준일	취소 위약금	반환기준일	취소 위약금
60일전	30%	20일전	10%
30일전	50%	15일전	20%
20일전	70%	10일전	30%
10일전	90%	5일전	40%
		1일전	50%

-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은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과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의 이용특성이 다름에도 구분 없이 반환기준을 규정하고 있고, 최소 취소위약금이 30%로 규정되어 일반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대규모 문화행사 및 경기시설 7개소는 행사유치와 개최를 위한 절차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되는 특성상 취소시의 피해가 크므로 이는 현재 조례규정을 유지하고, 시민이용 체육시설 12개소와 같이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신청당일과 10일 전까지 전액 반환하고 5일 전 10분의 9, 1일 전 10분의 7 범위에서 반환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붙임 1

집행부 검토의견

**의안번호
074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주요내용	서상열 의원 (도시계획균형위원회)	2023.5.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추진경과	<제안이유> ○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 주민단체들의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 목적의 행사 개최 시 일부 이용료를 감면해 지역기반 공동체 행사 활성화 <주요요지> ○ 지역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해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관련 이용료 일부 감면 ○ 별표 5의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의 금액란 중 “50,000~65,000”을 “35,000~65,000”으로 변경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 지역기반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 개정안의 ‘지역’의 범위에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공공목적’이 포괄적이므로 ‘지역’을 ‘체육시설이 소재한 자치구’로 한정하고, ‘공공목적’을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의 공공목적 행사’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 또한, 해당 상업사용료 최소 부과금액을 50,000원에서 35,000원으로 낮춤으로서 특별한 사유·조건없이 모든 행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바, 취지에 맞게 지역 직능단체, 주민단체에 적용되도록 제한 필요 ○ 조례개정 수정안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정안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의원발의 조례개정안	수정안		
	<p>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4.(생략)</p> <p>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마.(생략)</p> <p>바. <u>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u>(신설)</p> <p>사. (현행 바목과 같음)</p>	<p>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4.(생략)</p> <p>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 가.~마.(생략)</p> <p>바. <u>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 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이 경우 별표 5의 상업사용료에 대해 100분의 3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u>(신설)</p> <p>사. (현행 바목과 같음)</p>		
대응방안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주소연(☎2133-2677)	담당	김병모(☎2133-2678)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35,000~65,000

[별표 5] 상업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일,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프로그램, 선전책자 및 기타 행사관련 물품판매	판매부스 1개당(5㎡ 기준) 50,000~65,000

의안번호
0774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김춘곤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5.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에서 체육시설 예약 취소 위약금 상한액을 10%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 공공체육시설의 위약금 상한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도록 권고(2020.6월)하고 있음 ○ 전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중 청소년들의 사용이 많고 시민들의 예약 취소로 시설 운영의 영향이 적은 생활체육시설(풋살구장, 다목적구장, 인라인하키장, 축구장 등)의 취소 위약금을 사용료의 30%~90%에서 10%로 조정하여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도모 <p><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풋살구장 등, 규칙으로 정함)으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취소 시 일자별 반환금을 규정(안 제11조제2항제11호)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30. 김춘곤 의원 발의 - (찬성)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의원 등(44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체육시설 중 풋살경기장·다목적구장 등 시민이용 생활체육시설은 실제 이용을 위한 사전예약이 시설별로 30일 이내에서 이뤄지고 있음 ○ 현 조례규정은 반환기준이 60일로 현실과 맞지 않고 최대 90%까지 취소 위약금을 부과하여 시민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는 점에서 조례개정이 필요함 ○ 조례개정안은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관형태를 감안, 대규모 공연, 경기 등의 행사대관 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구분하였으며, ○ 각 시설별 의견을 반영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 적절한 반환수수료를 규정하고, 적용시설은 행정청이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시설이 변경될 때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원안에 동의 		
대응방안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주소연(☎2133-2677)	담당 김병모(☎2133-2678)

의안번호
0803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이성배 의원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3.5.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경기·공연 등으로 인한 각종 소음, 교통체증 발생으로 인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 거주 주민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등 혜택을 주어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 <p><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u>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u> (안 제10조의1바목 신설) ○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u>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할 수 있도록 함</u>(안 제10조의2호사목 신설)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30. 이성배 의원 발의 - (찬성)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의원 등(49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잠실종합운동장 주변 소음영향평가 실시 결과 행사와 경기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원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피해의 범위와 규모는 시설별 조사를 통해 확정이 필요한바, 조례개정안은 피해주민에 대한 감면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이 피해 및 지원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개정안에 동의 		
대응방안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주소연(☎2133-2677)	담당 김병모(☎2133-2678)

의안번호
0859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제 안 자	제안일자	소관 상임위		
	강석주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2023.5.3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내용	<p><제안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22년 합계 출산율은 0.78, 서울은 0.59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여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영역에서 보다 다자녀 가족을 우대, 다자녀 양육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필요 <p><주요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안 제9조제3항제4호 신설) ○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규정(안제10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5.30. 강석주 의원 대표 발의 - (발의자)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의원 등 30명 				
부 서 검토의견	원안가결(○) / 수정가결 () / 부결() / 보류()				
쟁점사항 (의회동향, 문제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안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면제 사항을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으로 개정 - 입장료 50% 감면을 면제로 혜택 확대 ○ 이는 4명보다 많은 다둥이 가족에 대해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족의 체육시설 이용 시 부담을 줄여 공공의 영역에서 저출산 극복에 대한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 				
대응방안	○ 해당 없음				
담당부서	체육정책과	팀장	주소연(☎2133-2677)	담당	김병모(☎2133-2678)